

배포 일시	2022. 11. 30.(수)		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장 허경민 (044-201-3224)
		담당자	사무관 김동희 (044-201-4816)
보도일시	2022년 12월 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교통 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위한 규제개선 추진

### - 자동차·물류·건설업계 과도한 행정제재·의무 및 행위제한 규정 완화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 원숙연)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·의결하고,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.

-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,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(300만원 이하)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.

-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

-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,

-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.

○ 또한,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「국가계약법」 또는 「지방계약법」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,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「건설기술진흥법」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한편, 지하안전평가\*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을 개정하여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.

\*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·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

- 이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자 함과 동시에, 무실적으로 등록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.

○ 나아가,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·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·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(8시간)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(8시간)을 받은 경우, 당해 연도의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연 8시간의 보수교육(지자체 시행) 이수 의무를 면제한다.

## ② 자동차·건설·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를 개선한다.

○ 현행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를 경우,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(OTA)\*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되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.

\* OTA(Over The Air) : 새로운 소프트웨어,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

- (예시) 유무선통신장치, 첨단운전자보조장치, 파워트레인/구동계 관련 제어장치, 샤시제어장치, 바디제어장치, 전원제어장치, 에어백제어장치, 조향장치 등

-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,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「자동차관리법」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비자 편의를 개선한다.

○ 한편, 복륜\*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\*\*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(이하 매뉴얼) 개정을 추진한다.

\* 한쪽 축에 2개의 타이어를 설치하는 것으로, 한 개의 타이어로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경우나, 험한 길에서 주행능력을 높일 때 사용

\*\* 나란히 조립되는 타이어가 직접 접촉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중간에 설치되는 부품

-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, 복륜 자동차의 경우 안전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,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을 개정한다.

\* (사례) 주된 공종분야 기술인 : 현행) 중복 제한 → 개선) 최대 2건까지 가능  
그 외 기술인 : 현행) 2건까지 가능 → 개선) 최대 4건까지 가능

○ 또한,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,

- 보도블록 철거<sup>①</sup> 및 도배공사 단가<sup>②</sup> 기준,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<sup>③</sup> 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하며,

\* ① (현행) 인력 시공 비용만을 규정 → (개선) 장비 시공 등에 대한 비용도 산출 가능

② (현행) 자재(실크벽지)·대상(공동주택) 한정 → (개선) 자재, 대상 구분 없이 단가 산정

③ (현행) 특정 파쇄 장비 사용 비용만을 규정 → (개선) 장비 구분 없이 단가 산정

-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(한국건설기술연구원) 신청을 허용\*한다.

\* 그간 개인 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미흡 우려로 법인 사업자의 신청만 접수하여 처리했으나, 개인 사업자의 신청도 접수하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협조 문서 시행 예정

③ 그 밖에도,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·관리 규제를 개선하고,

○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·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을 추진하여, 국민 생활 불편사항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“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,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연번	과제 세부 내용	조치사항	담당자 (연락처)
1	<p>□ <b>영업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중복 제재 개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현황)</b>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,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*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1조제1항제3호</li> <li>-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(300만원 이하)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*하고 있어 업계 부담 가중 *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91조제1항제8호</li> <li>○ <b>(개선)</b> 영업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만을 규정하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</li> </ul>	<p>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안 개정 추진 ('23.1~)</p>	<p>기술혁신과 김종현 사무관 (044-201-3566)</p>
2	<p>□ <b>입찰서류 위·변조 등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행정처분 완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현황)</b>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1조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 위·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의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, - 「국가계약법」 제27조에서는 동일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(2년 이내)을 규정하고 있어, 법 간 형평성 고려 필요</li> <li>○ <b>(개선)</b>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 위·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제한만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(등록취소규정 삭제)</li> </ul>	<p>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안 개정 추진 ('23.1~)</p>	<p>기술혁신과 김종현 사무관 (044-201-3566)</p>
3	<p>□ <b>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무실적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 기간 완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현황)</b>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(지반분야 민간 전문 엔지니어링업체)이 2년간 업무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 취소 및 2년간 재등록 불가</li> <li>○ <b>(개선)</b> 무실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을 6개월로 완화</li> </ul>	<p>「지하안전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23.5.)</p>	<p>건설안전과 위성화 사무관 (044-201-3584)</p>

연 번	과제 세부 내용	조치사항	담당자 (연락처)
4	<p>□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전자 중복 교육 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황) 화물자동차법은 일반화물 운전자에게 매년 1회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, 그 중 위험물질 운전자에게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</li> <li>- 위험물질 운전자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·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위험물 운반자교육,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을 받아야 하는데, 교육내용이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유사함</li> <li>○ (개선) 위험물질 운전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·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8시간 보수교육을 면제</li> </ul>	<p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개정('23.5.)</p>	<p>물류산업과 이경섭 사무관 (044-201-4021)</p>
5	<p>□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정비업소 외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황)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(OTA)하는 정비행위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방문해야 가능</li> <li>○ (개선) 차량소유자가 정비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</li> </ul>	<p>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제132조 개정('23.5.)</p>	<p>자동차운영보험과 김태홍 사무관 (044-201-3858)</p>
6	<p>□ 복륜 자동차 스페이서 설치 제한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황) 복륜 자동차의 스페이서 설치를 일괄적으로 제한</li> <li>○ (개선)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복륜의 스페이서 설치 허용</li> </ul>	<p>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 업무 매뉴얼 개정('23.1.)</p>	<p>자동차정책과 심형석 사무관 (044-201-3840)</p>
7	<p>□ 시공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중첩도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황) 시공 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과업 및 업무 유형이 설계용역보다 난이도가 낮은 업무임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복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분야별 기술인 중 주된 공종 1인 중복 제한, 그 밖의 건설기술인 총 3건 이상 중복 제한</li> </ul> </li> <li>○ (개선) 시공 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복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분야별 기술인 중 주된 공종 1인 총 3건 이상 중복 제한, 그 밖의 건설기술인 총 5건 이상 중복 제한</li> </ul> </li> </ul>	<p>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개정 ('23.1.)</p>	<p>건설안전과 김기봉 사무관 (044-201-4592)</p>

연 번	과제 세부 내용	조치사항	담당자 (연락처)
8	<p>□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 유연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황) 건설 공사비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에서 일부 공종(보도블록 철거, 도배공사, 건설폐기물 파쇄)의 경우 특정 공법, 대상 등에 한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규정 중</li> <li>○ (개선) 특정 공법, 대상 등에 한정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공사비 산정방식 유연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보도블록 철거 (現) 인력 시공 비용만을 규정 → (改) 장비 시공 등에 대한 비용도 산출 가능</li> <li>② 도배공사 (現) 자재(실크벽지)·대상(공동주택) 한정 → (改) 자재대상 구분 없이 단가 산정</li> <li>③ 건설폐기물 파쇄 (現) 특정 장비(크라샤) 비용만을 규정 → (改) 장비 구분 없이 단가 산정</li> </ul> </li> </ul>	표준시장단가 개정('23.1.)	기술혁신과 윤상원 사무관 (044-201-3570)
9	<p>□ 개인사업자의 방화셔터 인정 신청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황) 자동방화셔터 품질인정 신청은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고, 개인사업자 신청 불가</li> <li>○ (개선)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품질인정기관(한국 건설기술연구원)에 자동방화셔터 품질인정이 가능토록 운영 예정</li> </ul>	품질인정기관에 공문 발송 ( '22.11.)	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(044-201-4988)
10	<p>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 합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황)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존치기간이 3년 이내 가설건축물, 재해복구·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설치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('21.1)하였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과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지역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설치가 어렵고,</li> <li>- 존치기간이 3년이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나, 관련지침이 미비 하여 일선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에 혼란</li> </ul> </li> <li>○ (개선)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해 제한적인 설치를 허용하고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	<p>국 토 계 획 법 시행령 제 50 조 의 2 개정('23.6.)</p> <p>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('23.3.)</p>	도시정책과 성상명 사무관 (044-201-3718)

연 번	과제 세부 내용	조치사항	담당자 (연락처)
11	<p>□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.방법시설 제외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황)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할 보안.방법 시설 등의 설치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</li> <li>○ (개선) 첨단 보안.방법 시설 도입 시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련 시설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자율적 조정 권한 부여</li> </ul>	<p>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및 별표1 개정('23.3.)</p>	<p>주택건설공급과 김선미 사무관 (044-201-3376)</p>